

신용카드 가맹점 부속약관

제1조(목적)

이 부속약관은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하나카드(이하 "카드사"라 함)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(이하 "표준약관"이라 함)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"카드"는 하나카드 및 제휴사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(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), 선불카드(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)를 의미합니다.
- ② 표준약관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"카드회원"은 하나카드 및 제휴사의 회원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자와 선불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.

제3조(매출전표의 접수)

표준약관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비자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, 온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8일 이내, 마스터카드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

제4조(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용)

- ① 카드사는 표준약관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 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적용합니다.
 1. 신용카드 판매대금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 단,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 방식(예금잔액 범위 내 즉시 인출)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 2. 직불카드 판매대금에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 단, 직불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방식(신용한도 범위 내 신용매출)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American Express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경우, American Express 브랜드 카드 매출에 대해 그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
제5조(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)

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2호에 따라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(수기 매출전표 포함)인 경우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할 수

있습니다.

제6조(매입업무 대행)

- ① 카드사는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과 별도로 맺은 계약에 의해 가맹점 매입업무 대행(이하 '업무대행')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'업무대행'이라 함은 카드사가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,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(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) 및 선불카드(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)(이하 '타사카드'라 함)와 그 회원(이하 '타사회원'이라 함)이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'타사카드' 거래 시, 거래승인, 매입, 가맹점 앞 신용판매대금 지급 등 가맹점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일련의 업무를 카드사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③ 이 부속약관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사 및 회원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카드사가 '업무대행' 계약을 맺은 '타사카드' 및 '타사회원'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및 운영되고, 카드사는 '타사회원'이 가맹점에서 '타사카드'를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을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을 대신하여 회원과 거래 시 지급하는 가맹점 신용판매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.
- ④ 카드사는 '타사카드'의 거래로 인하여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이 가맹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맹점 신용판매대금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과 함께(병존적으로) 그 채무를 인수합니다. 한편, '타사카드'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이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카드사는 제휴사 및 타 금융기관 등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